

「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(신설) 시설 이용실태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(안 제5조제3항)
- 나. (신설) 체육시설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(안 제5조의2)
- 다. (신설) 통합예약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의3)
- 라. (신설) 시설 사용의 공정성 확보 및 독점 방지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마.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8조)
- 바. (신설) 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철거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4조)
- 사. 사용 제한 및 위반자 제재 등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18조)
- 아. (신설) 신동생활체육공원에 관한 사항(안 별표 1, 별표 2)
- 자. 용어, 문구 및 인용사항 정비(안 제8조, 제12조, 제19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체육시설의 이용 시간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시설 사용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개정된 이용시간¹⁾과 별표 2의 조기·야간 시간²⁾ 구분이 상이하여 시설 이용 및 사용료 산정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, 관련 기준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.

1) 제5조의2(이용시간)

1. 하절기(3월~10월) : 05:00 ~ 22:00 2. 동절기(11월~2월) : 06:00 ~ 22:00

2) 조기(06:00~09:00), 주간(09:00~18:00), 야간(18:00~23:00) 각 1회를 적용한다.

- 또한, 신동생활체육공원 축구장은 무료로 운영되는 반면 구포생활체육공원 축구장은 전용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어 유사 체육시설 간 형평성을 고려한 사용료의 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